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4-46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안부살핌 소포우편서비스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우정사업본부장

‘안부살핌 소포우편서비스’ 시험적 실시

1. 개요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정보와 생활용품이 담긴 소포우편물을 배달하고,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안부확인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안부살핌 소포우편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예외 적용

2. 주요내용

가. 이용방법 :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등과 우편관서 간 이용계약 체결

나. 접수방법 : 소포우편물 접수

다. 배달취급 : 집배원을 통한 대면배달, 2회 배달시도 후 비대면 배달

라. 정보회신 : 체크리스트 우편 회신

마. 요금체계 : 5,000원 (3Kg, 80cm 이하 단일요금 적용)

부 칙

이 공고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